

1. 회의일시 : 2023년 07월 17일(월) 20:00 ~ 20:30
2. 회의방법 : 비대면 회의
3. 회의장소 : Zoom Cloud Meeting (ID: 618-892-3192)
4. 사회: 감사 지미영(부산대), 기록: 사무간사 서희(부산대)

1. 정기 총회 성원 파악 감사

지미영 감사가 2023년 7월10일 기준으로 총원 50명 중 현재 출석 16명, 위임장 15명으로 참가자 31명으로 임시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알림.(20:05pm)

(온라인 상의 임시총회라 회원들이 회의 진행 중에도 참가하거나 총회 직전 위임장을 보내준 인원이 있어 총 40명이 참가함)

2. 개회선언 사회자

지미영 감사가 사회를 맡아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2023년 제2회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을 함.

3. 국민의례 생략 사회자

사회자가 국민의례는 생략한다고 말함.

4. 인사말 이사장

박창언 이사장이 인사말을 함.

5. 보고사항 사회자

사회자가 PPT를 화면 공유하여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상반기 사업 및 행사보고를 하고 정리하고, 하반기 행사계획을 보고함.

- 보고1.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등재후보지 신청
- 보고2. 사무소 연장 계약
- 보고3.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제3권 1호 6월30일 발간
- 보고4. 사하구, 북구, 해운대구 진로교육센터 중3진로연계학기 사업 (3월~11월)
- 보고5. 국내학술대회-8월30일
- 보고6. 쓰촨국제학술대회-10월13일~14일

6. 안건1 임기 종료 임원의 재임건 협의 감사

사회자가 PPT를 화면 공유하여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안건1. 임기 종료 임원의 재임건은 상정함. 이에 찬성하면 ‘예’라고 하고 반대를 할 경우 ‘반대합니다’를 발언하도록 함. 모두 ‘예’라고 답함으로써 재임 승인안이 통과됨.

* 임기 종료 임원(5인)-재임 승인

2023년 6월20일 임기 종료 -> 재임 시 이사 승인 후 4년
감사 승인 후 2년

이종원
이성건
여상운
윤미승
강현숙

7. 안건2 정관 변경 건 협의감사

사회자가 PPT를 화면 공유하여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안건2. 정관 변경 건을 상정함. 정관 변경 건은 학회의 영문명의 변경, 정관과 회칙 내용의 일치와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용을 수정하며, 더불어 오타 등을 수정함. 총 7개의 변경 사항을 사회자가 낭독하여 찬성 하면 ‘예’라고 하고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반대합니다’를 발언하도록 함. 모두 ‘예’라고 답함으로써 정관 변경건이 모두 통과됨.

-정관변경 사항

1. 학회 영문명 변경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Incorporated Association Korea Society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Educ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

=> Korea Soc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2. 제4조 5호 문항 추가(회칙과 동일)

=> **5. 그 밖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와 연구사업
2. 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3. 학회지, 기타 출판물 간행·보급 및 회원의 연구활동 여건 조성사업
4.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 활동 지원사업

3. 제6조(회원자격과 종류) 2항 2조 내용 수정 및 추가

2. 학생회원은 교육 및 인접학문을 전공으로 하고있는 석사과정 재학생을 말한다.

⇒ 학생회원은 교육 및 인접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과정 재학생을 말한다.

⇒ 추가내용: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학생회원 자격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4.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3항 수정

③ 결석회원의 총회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된 바에 따라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다.

5.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항 2번 오타 수정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6. 용어의 통일 수정: '단' -> '다만'

7. 제31조(상설위원회)4항 간사 선임권 삭제

④ 전항의 위원장과 간사는 정회원 중에 이사장이 선임한다.

=> 전항의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 이사장이 선임한다.

8. 각 위원회 및 회원의 기타 논의사항사회자

사회자가 각 위원회 및 회원의 기타 논의사항을 물어봄. 논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함.

9. 폐회 선언사회자

사회자가 이로서 2023년 제2회 임시총회 안건을 모두 소화하였으므로 오늘 총회의 폐회를 오후 8시 28분에 폐회를 선언함.